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75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5. 4. 24.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5. 4. 11.
- 회부일 : 2025. 4. 11. (의안번호 : 25-39)

2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 주관 ‘2024년 공공 게시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’에 선정되어 사업비 120백만원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지원받음에 따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를 위해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원금 120백만원을 활용, 폐기물 없는 광고매체인 LED 전자게시대 1기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,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홍보 기회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- 2024년도 사업 미실시로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120백만 원을 감액하고,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시설비 40백만원에 지원금 120백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(기금의 용도)

5. 검토보고

- 본 변경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기금 예치금을 감액하고 지출을 증액할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- 이월사업으로, 2024년도에 설치 예정지였던 합정역 8번 출구는 동계 굴착공사 금지 기간(12.1.~2.28.) 도래, 민원 발생 등으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아현 교차로(아현동 354-23 인근)으로 설치 장소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다시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‘전자게시대’ 법적기준

- ▶ 설치지역: 상업·공업지역, 철도역·지하철역 광장, 전통시장 100m이내 지역
- ▶ 설치조건: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 유지
- ▶ 표시방법: 표시면적 12㎡이내, 정지화면으로 표시(점멸 또는 동영상 금지)

○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

행정안전부에서 ‘2024년 공공 게시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’¹⁾에 선정되면서 교부받은 120백만원이 2025년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으며, 2025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출 계획에 ‘공공 전자게시대 확충 사업’을 신설하고 120백만원을 편성하여 당초 40백만원 광고물 개선사업 시설비를 총 160백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임.

○ 마포구는 현재 LED 전자게시대 총 3기를 운영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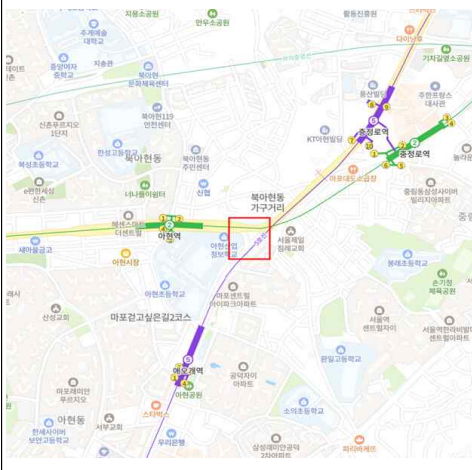
<전자게시대 현황>

홍대입구역 사거리	동교동삼거리	공덕오거리
		

1) 행정안전부의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은 도시미관·보행안전·자원순환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, 현수막 지정 게시대, 공공전자 게시대,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전국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임.

○ 추가 예정 설치위치 : 아현동 354-23(아현교차로)

※ 설치 위치는 향후 지하매설물 등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

위 치	위치도	설치 시뮬레이션
아현교차로 (아현동 354-23) 인근		

○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원금 120백만원을 활용하여 폐기물 없는 광고매체인 LED 전자게시대 1기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홍보기회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목적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불법 광고물 감소를 위하여 적법한 광고물 게시를 위한 공공 옥외광고 인프라 확충,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.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[시행 2022. 12. 29.](일부개정)2022.12.29. 조례 제1520호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.

1. 광고물 등의 정비
 2. 경관개선
 3.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
 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 5.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
 6.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7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